

2026년 제 9호
발행인 북하면장



[2026. 5. 6.(수)]

2026년 5월 첫번째

이 장 회 보

2026 장성 황룡강 음악힐링축제

26. 5. 23.^토 ~ 5. 25.^월 장성 황룡강변



주최 |  장성군 주관 | 장성군축제위원회



목 차

■ 총무팀

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 신고 안내	3
2.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주불명등록자 선거참여 안내	3
3. 허위 거소투표신고 및 투표목적 위장전입 등 위법행위 예방	4
4. 2026 장성 황룡강 음악 힐링 축제 개최 안내	4
5.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5
6. 2026년 집중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 홍보	5
7.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 정비관련 홍보	6
8. 전남 어르신 생활체육대축전 대비 공공체육시설 휴관	6
9. 2026년 전남인재육성장학금 신청 안내	7
10. 제21회 전라남도 어르신 생활체육 대축전 안내	8
11. 2026년 청년문화예술패스 안내	8
12. 장성군 대학생 주거비 지원사업 안내	9
13. 장성군민안전보험 운영 안내	9
14. 이장 및 주민자치위원 정치적 중립 준수 안내	10
15. 공무원 등 사칭 물품주문 빙자 사기 피해 예방 홍보	10
16. 주민여론 및 마을동향 알림 협조	10
[붙임 1] 거주불명등록자 선거참여 안내문	11
[붙임 2] 허위 거소투표신고 및 위장전입 등 주요 위반사례	12
[붙임 3] 5월 근로장려금 마을방송(안)	13
[붙임 4,5]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관련 홍보포스터	14
[붙임 6] 2026년 5월중 21세기 장성아카데미 강연 안내	16
[붙임 7] 필암서원 역사토크 史랑방콘서트 안내	17
[붙임 8] 아·통장, 주민자치회 위원 관련 「공직선거법」 유의사항	18
[붙임 9] 장성군민안전보험 보장 내역	21

■ 맞춤형복지팀

1. 2026년 제54회 어버이날 행사 추진 및 보조금 지원 안내	22
2. 통합돌봄 방문맞춤운동지원사업 운영 안내	23
3. 2026년 우리동네복지기동대 운영 안내	24

■ 산업팀

1.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안내 25
2. 2026년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 26
3. 2026년 2차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 안내 27
4. 2026년 전략작물직불 사업 신청 안내(하계) 27
5. 2026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신청 안내 28

■ 민원팀

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29
2. 2026.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안내 30
3. 2026.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안내 30
 - [붙임 1]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31
 - [붙임 2]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등 32

■ 보건지소

1. 통합 경로당 건강관리사업 안내 34

총 무 팀

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 신고 안내

- 신고기간 : 2026. 5. 12.(화) ~ 5. 16.(토) (5일간)
- 신고방법 : 서면(우편), 장성군청 홈페이지
-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구 분	신 고 대 상 자
거소 (주택 등 거주하는 곳 에서 투표할 사람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해당 지역 없음) 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 위 신고대상 ①·②·⑥(기관·시설에서 격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③의 경우(「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위 신고대상 ④·⑤·⑥(자가치료 격리에 한정)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장애인 거주시설에 기거하는 선거인은 통·리·반의 장의 확인 필요

○ 문 의 처 :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계 (☎ 061-394-1390)

협조사항 [담당자 김유정 ☎ 390-7973]

해당되는 주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2.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주불명등록자 선거참여 안내

협조사항 [담당자 김유정 ☎ 390-7973]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주민등록지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의 주소로 된 사람은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5.29.~5.30.) 또는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6.3.)에서 투표 가능하오니 해당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붙임1] 참조**

※ 거주불명등록자는 행정상 관리주소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투표안내문과 후보자 등의 선거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허위 거소투표신고 및 투표목적 위장전입 등 위법행위 예방

1. 「공직선거법」 제247조는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거나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완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2026. 6. 3.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역중심의 선거구조와 근소표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지방선거의 특성상 허위 거소신고 및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등 위반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3. 이에, 거소투표신고 및 전입신고 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사항 [담당자 김유정 ☎ 390-7973]

[붙임2] 사례를 참고하여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

4. 2026 장성 황룡강 음악 힐링 축제 개최 안내

- 기 간 : 2026. 5. 23.(토) ~ 5. 25.(월) / 3일간
※ 개막식 : 2026. 5. 23.(토) 18:30 / 황룡정원 주무대
- 장 소 : 황룡강변 일원
- 주최/주관 : 장성군 / 장성군축제위원회
- 프로그램

구 분	내 용
문화·공연	· 개막 축하공연(홍진영 등), 불꽃놀이, 뮤직페스티벌(로이킴 등) 버스킹 전국대회(20개팀), 지역예술인 공연 등
전 시	· 지역예술인·동호회 작품, 피아노 포토존
체 험 / 참 여	· 수상레저, 힐링열차, 어린이 놀이터, 원목놀이, 음악놀이터 소원브릿지, 테마체험, 북캠프닉, 스탬프투어 등
먹거리·판매	· 식당(4), 간단먹거리(8), 푸드트럭(7), 농·특산물(10), 프리마켓(10)
이 벤 트	· 3시간 머물장, 뮤직페스티벌 앞좌석 이벤트, 추억의 보물찾기

협조사항 [담당자 김유정 ☎ 390-7973]

많은 군민과 방문객이 함께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5.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6. 5. 1.(금) ~ 6. 1.(월)
- 신청대상 : '25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두 갖추어야 함
 ※ 25년 반기 신청자는 제외(심사 후 6월25일 지급예정)

- ① 가구유형별로 1가구에 1명만 신청 가능
- ②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소득기준금액 미만

구 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4,400만원
재년장려금	7,000만원		

*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

- ③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

○ 신청방법

- (전자신청) ARS 1544-9944,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인터넷)
- (상담센터) ☎ 1566-3636(평일 09:00~18:00까지)

협조사항

[담당자 김유정 ☎ 390-7973]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마을주민들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마을방송[붙임3] 등 적극 안내

6. 2026년 집중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 홍보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의 3(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 등)
- 점검기간 : 2026. 4. 20. ~ 6. 19.(61일간)
- 점검대상 : 공공시설 및 안전취약계층, 민생중심시설
 - 전통시장,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노후건축물, 어린이놀이시설 등
- 신청방법 : 온라인(신문고 접수) 및 오프라인(북하면행정복지센터 접수)
 - 2026년 집중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서[별첨]

협조사항

[담당자 강기현 ☎ 390-7974]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직접 점검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7.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 정비관련 홍보

- 추진개요 : 제6회 국무회의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와 관련한 대통령 말씀에 따라 전국적으로 전수 재조사를 실시
- 홍보내용
 - 불법시설 자진철거 유도, 불법 상행위 근절, 안전신문고 접수 방법 안내 등
 - 홍보포스터 참조[붙임 4,5]
- 홍보방법
 - 마을방송을 통한 불법시설 정비 홍보
 - 각 마을 경로당 부착(홍보 포스터 별도 배부)

협조사항 [담당자 강기현 ☎ 390-7974]

불법시설 없는 하천·계곡을 위해 이장님들께서는 적극 홍보

8. 전남 어르신 생활체육대축전 대비 공공체육시설 휴관

- 기 간 : 2026. 5. 11.(월) ~ 5. 17.(일), 7일간
- 대 상 : 장성군 공공체육시설

연번	공공체육시설명	종 목	휴 관 기 간	비 고
1	홍길동체육관	배드민턴	5.11.(월) ~ 5.17.(일) ※ 홍길동체육관(지하) 운영 · 5.11.(월) ~ 5.13.(수) · 5.16.(토) ~ 5.17.(일)	
2	옐로우시티 스타디움	그라운드골프		
3	군민회관	탁구		
4	국궁장(백학정)	궁도		
5	장성호축구장(A)	게이트볼		
6	삼계테니스장	소프트테니스		
7	위라밸동경기장			
8	파크골프장(A,B구장)	파크골프	5. 6.(수) ~ 5. 15.(금)	

협조사항 [담당자 복성운 ☎ 390-7972]

체육시설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휴관 안내 및 홍보

9. 2026년 전남인재육성장학금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6. 4. 17.(금) ~ 2026. 5. 15.(금) 18:00까지
- 지원대상 : 4. 9.(목) 기준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부 또는 모, 후견인)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라남도 주소에 두고 분야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지원분야

(선발기준 : 전라남도)

지원유형	학 년	학 년					비고 (추천/접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학교밖청소년	
전남인재 장학금	전라남도 장학금	-	-	10명 (1,000천원)	-	-	온라인 접수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	-	-	-	-	25명 (1,000천원)	온라인 접수
	만학도 장학금	25명(초등학생 ~ 대학생) (500천원)				-	온라인 접수
	긴급지원 장학금	-	-	-	상시접수 (1,500천원)	-	온라인 접수
	기회균등 장학금	-	2명(장성기준) (1,000천원)	2명(장성기준) (1,000천원)	3명(장성기준) (1,500천원)	-	시·군 추천/ 면사무소 접수
전남정착 장학금	취업장려 장학금	-	-	40명 (1,000천원)	60명 (1,500천원)	-	온라인 접수
	해양에너지 장학금	-	-	-	3명(장성기준) (1,500천원)	-	시·군 추천/ 면사무소 접수
특별지정 장학금	전남·경기 녹색에너지 장학금	-	-	19명(장성기준) (500천원)	16명(장성기준) (1,500천원)	-	시·군 추천/ 면사무소 접수
	전남학숙 장학금	86명 (1,000천원)				-	전남학숙 추천/ 전남학숙 접수
	전남-한전 지역상생 장학금	-	-	22명 (1,000천원)	27명 (1,500천원)	-	온라인 접수
	전남-한전KPS 지역상생 장학금	-	-	27명 (1,000천원)	32명 (1,500천원)	-	온라인 접수

- 지원내용 : 분야별 50만원 ~ 150만원 장학금 지원
- 신청방법 : 분야별 온라인 접수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상세, 본인과 부모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각 제출),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명의), 재학증명서, 통장 사본(본인 명의)

※ 각 분야별 자격요건 및 추가서류는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www.jntle.kr/main)의 공고 참조

협조사항

[담당자 복성운 ☎ 390-7972]

장학금 신청 희망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10. 제21회 전라남도 어르신 생활체육 대축전 안내

- 기 간 : 2026. 5. 14.(목) ~ 5. 15.(금)
- 장 소 : 옐로우시티스타디움 외 종목별 경기장
- 대회일정

종 목 명	대 회 일 정		경 기 장	위 치
	5. 14.(목)	5. 15.(금)		
게 이 트 볼	09:00~18:00	09:00~16:00	장 성 호 축 구 장 (A)	장성읍
궁 도	14:00~17:00	09:00~12:00	국 궁 장 (백 학 정)	황룡면
그 라 운 드 골 프	13:00~18:00		스 타 디 움 주 경 기 장	장성읍
배 드 민 턴		13:00~16:00	홍 길 동 체 육 관	장성읍
산 약	08:00~14:30		축 령 산 일 원	서삼면
소 프 트 테 니 스	13:30~18:00	09:00~14:00	삼 계 테 니 스 장 워 라 벨 돔 구 장	삼계면 장성읍
체 조	14:00~16:30		문 예 회 관 대 공 연 장	장성읍
탁 구	13:00~19:00	09:00~13:00	장 성 군 민 회 관	장성읍
파 크 골 프	08:30~13:30		장 성 군 파 크 골 프 장	황룡면

협조사항 [담당자 복성운 ☎ 390-7972]

많은 군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

11. 2026년 청년문화예술패스 안내

- 신청기간 : 2026. 2. 25.(수) ~ 2026. 6. 30.(화)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19~20세 청년(2006.1.1. ~ 2007.12.31. 출생자)
※ 2025년 청년문화예술패스 이용자 신청 불가
- 지원내용 : 1인당 연 20만원 국내 공연·전시·영화 관람비 지원
- 신청방법 :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youthculturepass.or.kr)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
- 사용기한 : 발급일 ~ 2026. 12. 31.(목)
※ 예매일 기준 7. 31.(금)까지 사용금액이 없을 경우 지원금 회수

협조사항 [담당자 복성운 ☎ 390-7972]

19~20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12. 장성군 대학생 주거비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 주거비가 발생한 다음달 5일까지 신청
 - ※ 9월분부터는 학기별로 신청 예정
- 지원대상 : 장성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부모의 마지막 학년(대학 학제 기준) 재학중인 30세 이하 대학생
- 지원내용 : 월세 또는 기숙사비 월 3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제출서류 : 보호자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재학증명서,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통장사본(대학생 명의), 임대차계약서(또는 기숙사 입사 확인서), 월세 납입 내역(또는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 ※ 임대차의 경우 소속학교 인근 지역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시에만 가능

협조사항

[담당자 복성운 ☎ 390-7972]

대학교 마지막 학년 학생 또는 학부모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13. 장성군민안전보험 운영 안내

- 보장기간 : 2026. 2. 1. ~ 2027. 1. 31. (1년)
- 보장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장항목 : 28개 항목, 최대 보장액 2천만원[붙임 9]

2025년도와 달라진 점

- ▶ 보장항목 확대 : 26종 → 28종
 - 온열질환 진단비, 한랭질환 진단비 신설로 기후 변화에 따른 대응 강화

- 보 험 사 : NH농협손해보험(☎ 1644-9666)
- 신청절차 : 피해를 입은 군민(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협조사항

[담당자 강기현 ☎ 390-7974]

각종 자연 사회 재난으로 인적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험지원을 하는 군민안전보험을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

14. 이장 및 주민자치위원 정치적 중립 준수 안내

이장 및 주민자치위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며, 특히 선거기간과 관계없이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정당이나 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다.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협조사항

[담당자 김유정 ☎ 390-7973]

[붙임8] 자료 참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협조

15. 공무원 등 사칭 물품주문 빙자 사기 피해 예방 홍보

- 최근 장성군에서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여 물품을 구매하겠다고 신뢰 유도 후 특정 물품의 대납·대리구매를 요청하는 등 전화사기가 발생
- 예방 및 대응방법
 -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확인
 - 의심스러운 요청은 거절하고 필요시 경찰(112)에 즉시 신고

협조사항

[담당자 김유정 ☎ 390-7973]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역 소상공인,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

16. 주민여론 및 마을동향 알림 협조

- 주민 및 마을 동향 있을 시 수시 통보 바람
 - 마을 애 · 경사 및 자체 행사(모임, 회의 등)
 - 여론 및 미담 사례, 각종 사건, 사고 등 재난 사항

협조사항

[담당자 김나형 ☎ 390-7971]

발생 즉시 마을 담당 직원 및 북하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통보

2026. 6. 3.(수) 실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주불명등록자 선거참여 안내

안 내

2026. 6. 3.(수) 실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주민등록지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의 주소로 된 사람(이하 '거주불명등록자')을 대상으로 선거 참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선거참여방법**㉠ 거소투표**

- 신고기간 : 5. 12.(화) ~ 5. 16.(토)
- 신고방법
 - 온 라 인 : 주소지 시·군청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오프라인 :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시·군(읍·면·동 포함)의 장에게 제출(직접 제출 또는 우편 발송)
- 신고대상 : 병원·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

- 사전투표소 :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 사전투표기간 : 5. 29.(금) ~ 5. 30.(토) 오전 6시 ~ 오후 6시

㉢ 선거일투표

- 투표장소 :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
- 투표시간 : 6. 3.(수) 오전 6시 ~ 오후 6시

2 투표준비물

- 사전투표·선거일 투표 시 신분증명서 지참
 - * 신분증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3 참고사항

- 거주불명등록자는 행정상 관리주소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투표안내문과 후보자 등의 선거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허위 거소투표신고 및 투표목적 위장전입 등 주요 위반사례

□ 허위 거소투표신고 등

-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요양원 소속 사회복지사가 신고인의 의사 확인 없이 허위로 입소자 16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신고하여 명부에 오르게 함 → 고발,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1년
-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군 ▲▲리 이장은 신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선거인 5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신고하여 명부에 오르게 함 → 고발, 벌금 100만원
-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 등 10명(마을이장 및 돌보미 등 일반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가 아니거나 본인 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등 사위의 방법으로 마을 주민 16명을 대상으로 명부에 등재되게 하고 거짓으로 거소투표 → 고발, 벌금 50만원
-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은 A의 거소투표용지 우편물을 직접 수령한 다음 A에게 군수 후보 중 기호 ○번 B, 기호 ●번 C를 불러주는 등의 방법으로 권유하여 간섭하고 A 대신 거소투표용지에 기표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 정당 당원협의회회장인 □□□은 A의 집을 방문한 뒤 처마에 있던 A의 거소투표 봉투를 개봉하고 A가 '손이 떨리고 힘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자 A의 불펜 왼 손을 감싸잡고 임의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와 정당에 기표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투표목적 위장전입

- ◆ 제7회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의 친누나 ▲▲▲은 ○○○와 공모하여 자신의 식당 종업원들로 하여금 □□□에게 투표 목적의 허위 전입신고 → 벌금 200만원
- ◆ 제6회 지방선거 군의원 후보자에게 투표하기 위하여 □□□의 집에 ▲▲▲외 13명,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외 3명이 위장전입 → 벌금 150만원

마을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마을주민들께서는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에 기재된 ☎1544-9944 로 ARS신청 하거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으로 전화하시면

상담원이 직접 신청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상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불법시설 없는 깨끗한 하천·계곡 함께 만들어요!



불법점용 시설물 종류



평상, 그늘막, 방갈로, 컨테이너, 데크, 물막이 시설, 불법경작 등

- * 일반인과 업소 구분 없이 모든 불법행위 금지
- * 사유지라도 점용허가 없이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금지

불법점용 시설에 대한 처벌 경고



처분대상 |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하천을 점용한 자
처분방법 | 1차 계고 (15일 이내) ▶ 2차 계고 (10일 이내)

- ▶ 연 2회,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여+과징금 부과
- ▶ 행정대집행 (* 하천법 개정완료, 소하천정비법 개정 중 이익을 초과하는 과징금 부과 법 개정 예정)

안전신문고 접수 방법



- | | |
|---|---------------------------------------|
| Step.1 안전신문고 앱 실행 후 안전 신고 메뉴 및 유형 선택 | Step.2 신고 유형 중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선택 |
| Step.3 신고 요건 및 방법 안내 | Step.4 사진·동영상 첨부 후 제출 |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세요!

| 불법점용 시설물 종류 |

평상, 그늘막, 방갈로, 컨테이너, 데크, 물막이시설, 불법경작등

- ※ 일반인과 업소 구분 없이 모든 불법행위 금지
- ※ 사유지라도 점용허가 없이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금지



| 안전신문고 접수 방법 |



안전신문고앱 실행
안전신고메뉴 > 유형 선택



신고유형 중
'하천·계곡내 불법시설' 선택



신고요건 및 방법 안내



사진·동영상 첨부후 제출

|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 QR코드 접속 |



안드로이드



아이폰



Spring
2026
5월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이다.



▶ 장성군 유튜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제1231회 5월 7일 (목) 오후 4시~6시

말이 바뀌면 길이 열린다 :
삶을 바꾸는 말

오수향 SHO대학심리연구소 소장



제1232회 5월 21일 (목) 오후 4시~6시

기후는 경제다 :
기후위기 시대 대한민국 생존 전략

홍증호 교수

주최 | 장성군
Jangseong

주관 | KMA 한국농물협회

장성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장성읍 문화로 110) ☎ 061.390.8577

≡ 세계유산 필암서원 K-선비문화 프로젝트 ≡

史랑방



역사강사
설민석

2026.5.9(토) 14:00 ~ 17:00 / 필암서원 일원

필암서원 역사토크 史랑방콘서트

- 본행사** 14:30~16:30 _ 오프닝 연주, 설민석 토크콘서트
- 체험부스** 14:00~17:00 _ 선비부채 그리기, 어린이 유생복체험, 장명루 팔찌 만들기, 서예·가훈 쓰기, 펜북·캘리그래피, 전통놀이체험

[문의처 010-4433-7645] *선착순 현장입장



□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제60조)

- 이·통·반장 및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 포함) 위원은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 선거운동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공직선거법」 제7장에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통·반장, 주민자치회 위원이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 선거에 참여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임해야 함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원**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주민자치회 위원 적용 여부 : 대법원 적용

[대법원 2025.5.1., 선고 2025도3282] 「공직선거법」 위반

☞ **주민자치회**는 그 명칭과 관계없이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의 '**주민자치위원회**'에 해당하므로, **주민자치회 위원도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사람에 포함**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공직선거법」 제86조)

- 이·통·반장, 주민자치회 위원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삭제 <2010. 1. 25.>
5. **선거기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6.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7.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 각종 집회 등의 제한(「공직선거법」 제103조)

-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고, 주민자치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음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①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 주민자치회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26.3.4. 질의회신]

- 주민자치회가 선거기간 전에 선거와 무관하게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한 내부회의(정기회의, 임시회의 등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말함)를 개최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고 함)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이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해당 회의 개최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
- 다만,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일 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총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 제2항 제4호에 위반될 수 있음
- 한편, 법 제103조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을 것인바, 같은 법조 항의 ‘선거기간’은 법 제33조에 규정된 ‘선거기간’을 의미함

「공직선거법」 제33조(선거기간) ① 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23일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

③ “선거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부터 선거일까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 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라.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5.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다만,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 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붙임 9

장성군민안전보험 보장 내역

연번	보장 항목	최대보장액	비고
1	자연재해 사망	15,000	"24시간 상해" 중복보상
2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15,000	
3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15,000	
4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15,000	
5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15,000	
6	강도 상해사망	15,000	
7	강도 상해후유장해	15,000	
8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15,000	
9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15,000	
10	사회재난 사망	15,000	
11	익사사고 사망	7,000	
12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5,000	
13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5,000	
14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0,000 (부상 1등급~5등급)	
15	실버존사고 치료비	20,000	
16	급성감염병 사망	3,000	
17	자연재해 28일이상 진단 위로금	300	
18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15,000	
19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해	15,000	
20	자전거 사고 상해사망	5,000	
21	자전거 사고 상해후유장해	5,000	
22	성폭력 범죄 위로금	1,000	
23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100	
24	개물림사고 내원 진료비	100	
25	24시간 상해사망	5,000	-
26	24시간 상해후유장해	5,000	
27	온열질환 진단비	100	신규
28	한랭질환 진단비	100	

맞춤형복지팀

1. 2026년 제54회 어버이날 행사 추진 및 보조금 지원 안내

- 일 정 : 2025. 5. 1.(금) ~ 5. 31.(일) / 4주간
- 장 소 : 각 마을 경로당 등
- 대 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배부금액
 - 균등배부 : 마을별 × 100천원
 - 차등배부 : 노인수 × 4,720원
- 추진방법
 - 경로잔치 : 마을별 자체 추진
 - 표 창 패 : 표창패 전수
 - . 훈 격 : 군 수
 - . 표창인원 : 2명 (효행자 1, 장한어버이 1)
 - . 전수방법 : 표창패 전달 시 전수 취지(공직선거법) 안내

선거기간 60일 이내 표창패 수여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후보자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 직접 수여할 수 없음. (지자체 공직선거법규 운용자료)

- 행사 추진시 주의사항
 - 식당을 방문하여 드시는 식사 금지
 - 경로 위안잔치 목적으로 보조금을 사용한 “야유회 관광” 금지
 - 5월 31일까지 영수증 제출 바람

협조사항

[담당자 최하린 ☎ 390-7977]

마을별 행사 일정 변경시 면사무소로 연락요망

2. 통합돌봄 방문맞춤운동지원사업 운영 안내

- 지원대상 : 신체기능 유지,회복,강화가 필요한 거동불편 통합돌봄 대상자
- 수행인력 :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광주광역시회
- 서비스 횟수 : 1인당 10회(필요시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5회 추가지원 가능)
- 서비스 수가 : 1회 70,000원 / 40분
- 지원내용 : 물리치료사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 및 운동계획 수립·지도
- 서비스 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

서비스 수가	최대이용금액 (10회)	이용자 본인부담금 기준		
		무료	20% 부담 (14,000원/회)	전액부담
70,000원/회	700,000원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기초(장애인)연금수급자	중위소득 160% 이하	중위소득 160% 초과

【 본인부담금 발생비용 및 군 지원액 】

대상자	본인 부담률	본인부담금		군 지원액		비 고
		1회	10회	1회	10회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장애인)연금수급자	면제	무료	무료	70,000원	700,000원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20%	14,000원	140,000원	56,000	560,000	
그 외	100%	70,000원	700,000원	없음	없음	

※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5회 추가지원 될 경우 본인부담률(금) 및 군 지원액 기준과 동일 적용

협조사항

[담당자 최하린 ☎ 390-7977]

거동불편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적극 홍보

3. 2026년 우리동네복지기동대 운영 안내

○ 사업내용

[찾아가는 경로당 이미용 및 생기충전 서비스]

- 일 시 : 매월 세 번째 주 화요일 09:30 ~
- 주요내용 : 커트, 염색, 말벗되어드리기, 토스볼·기억력향상놀이 등

[취약계층 생활불편 개선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기타 취약가구
- 지원내용 : 가구당 재료(수리)비 최대 150만원 이내
 - 청소, 도배, 장판, 전기배선, 가스시설 개선, 창틀교체, 보일러 수리 등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 기준중위소득 1인기준 : 2,564,238원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융(10백만원 이하), 재산(130백만원 이하) 이내 가구

지원항목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생 계 비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의 료 비	○ 수술 및 입원비, 각종 검사 및 치료비, 입원치료 간병비* 지원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1인당 50만원 이내			
주 거 비	25만원		40만원	

협조사항

[담당자 최하린 ☎ 390-7977]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산 업 팀

1.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안내

- 신청기간 : 2026. 3. 1.(일) ~ 5. 29.(금)
- 대상농지 :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이거나,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 (쌀직불) '98~'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 대 상 자 : 대상농지 1천㎡ 이상을 실경작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

기존수혜자	'16~'19년 중 직불금(쌀·밭·조건불리) 1회 이상 수령자, 또는 '20년 이후 공익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정책대상자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농식품부 소관 정책대상자
신규농업인	직불금 등록 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0.1ha 이상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 지급단가
 - 소농직불(0.1~0.5ha) : 농가당 130만원(면적에 관계없이 동일)
 - 면적직불(0.5ha초과) : 1ha당 136~215만원(면적구간별 단가 적용)

* 지급상한(논+밭)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책

- ① 신규등록자, 관외경작자(50km이상)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철저
 (*실 경작자에게 서명 날인), 영양등급판정자는 전문의의 “활동가능진단서 필요
 (미제출 시 현장점검 실시, 단 1·2등급 판정자가 미제출시는 직불금 지급 제외)
- ② 농지대장 등재 필수 (임대차 기간 갱신 필요한 필지 사전 점검)

협조사항

[담당자 황인창 ☎ 390-7992]

2026년 기본공익직불제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주민 교육과 부정수급 피해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 홍보 협조.

2. 2026년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

○ 신청기간

- (기초·차상위) 2026년 4월 27일(월) ~ 5월 8일(금)까지
- (국민의 70%) 2026년 5월 18일(월) ~ 7월 3일(금)까지

○ 사용기한 : 2026년 8월 31일(월)까지

○ 지급금액

- 기초수급자 : 60만원 / 차상위·한부모 : 50만원
- 국민의 70% : 25만원

○ 신청자격

- (성 인) 2007. 12. 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
- (미성년자)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 본인이 아닌 경우 :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신청방법

- (선불카드, 장성사랑상품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신용·체크카드)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시행 첫 주는 요일제 적용**)

* IBK기업·KB국민·NH농협·하나·신한·우리·수협·신협 은행, iM뱅크, 부산·경남·광주·제주 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저축은행(체크카드취급점) / 일부 영업점 제외

**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5, 0 / 금요일부터 요일제 해제(5.1.노동절)

○ 사 용 처

- (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가맹점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유흥·사행업종 등 '사용제한 업종'을 제외한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

협조사향

(담당자 임정현 ☎ 390-7991)

지급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

3. 2026년 2차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6년 4월 29일(수) ~ 5월 20일(수)까지
- 사업대상 : 농어민 공익수당 미신청자이며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지급액 : 70만원
- 지급방법 : 장성사랑상품권(지류형 또는 카드형)
- 지급시기 : 연1회(6월 중)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협조사항

[담당자 임정현 ☎ 390-7991]

지원사업 대상자가 안내받을 수 있도록 협조

4. 2026년 전략작물직불 사업 신청 안내(하계)

- 신청기간 : 하계작물 26. 5. 29.(금)까지
- 사업내용 :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직불금 지원
- 지원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농업법인
 - 농외소득 3,700만원 미만(농업인), 전략작물재배 1,000㎡이상(작기별) 등
- 대상품목
 - 동계작물 :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등), 호밀, 귀리, 조사료 등
 - 하계작물 : 가루쌀, 두류, 옥수수, 조사료, 깨(참깨, 들깨), 수급조절용벼, 알팔파, 수수, 울무
- 지원단가
 - 하계작물 : 150~550원/㎡(가루쌀·두류 200원/㎡, 조사료 550원/㎡, 옥수수·깨150원/㎡)
 - * 동계 밀·조사료 + 하계 두류·가루쌀 이모작 시 100원/㎡ 추가 지급

협조사항

[담당자 황인창 ☎ 390-7992]

2026년 전략작물직불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5. 2026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6. 5. 29.(금)까지
- 지원대상 :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1천㎡이상 재배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법인)
- 지원품목
 - (도비) : 일반작물(식용옥수수, 깨, 고구마, 메밀, 수박 등), 녹비작물, 3년생이하 관목
(전년도 벼를 재배한 필지로 첫해만 지원)
 - (군비) : 두류, 일반작물(식용옥수수, 깨, 고구마, 메밀, 수박 등), 녹비작물, 3년생이하 관목
- 지원단가
 - (도비) : 200원/㎡(다만, 전략작물 직불대상에 포함된 식용옥수수, 깨는 50원/㎡)
 - (군비) : 40원/㎡

협조사항

[담당자 황인창 ☎ 390-7992]

2026년 논 타작물재배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5.12.까지 신고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5.13.부터 신고
전입신고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2026년 6월 3일 수요일
(투표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

✓ 2026. 5.13.부터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거일 투표소는
이전 주민등록에 있는 투표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협조사항

[담당자 이점봉 ☎ 390-7995]

주민들에게 홍보

2. 2026.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안내

- 기 간 : 2026. 4. 30. ~ 5. 29.(30일간)
- 대 상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내 용 : 토지 지번별 m²당 가격
- 열람 및 이의신청서 제출 방법
 - 방문 : 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FAX : 장성군 민원봉사과(061-390-7650)
 - 우편 : 장성군 민원봉사과(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
 - 장성군 홈페이지(<http://www.jangseong.go.kr>)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협조사항 [담당자 이점봉 ☎ 390-7995]

열람 및 이의 사항 있을 시 이의신청서[붙임1] 제출 홍보

3. 2026. 1. 1. 기준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안내

- 이의신청 기간 : 2026. 4. 30. ~ 5. 29.
- 대 상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내 용 : 지번별 개별주택가격 및 면적 등
- 열람장소 : 군청 세무회계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누리집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 방 법 : 개별주택가격의 적성성에 대한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적정가격을 이의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
 - 방문 : 군청 세무회계과, 북하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식 작성
 - 우편 : 장성군·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서식 출력 작성

협조사항 [담당자 이점봉 ☎ 390-7995]

열람 및 이의 사항 있을 시 이의신청서[붙임2] 제출 홍보

붙임 1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3. 30.>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 청 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 상 토 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이의신청 내 용	공시지가 원/m ²	의견가격 원/m ²
	신청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년 월 일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인

시장·군수·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m²)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관련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안내 >

① (수집 · 이용 목적)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접수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 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

② (수집항목)

(필수)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소유자와의 관계
(선택) 일반전화번호, 전자우편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된 정보는 내부 문서관리 기한에 따라 5년간 보존합니다.

④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의견제출 접수 신청 및 결과 회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서명)

보 건 지 소

1. 통합 경로당 건강관리사업 안내

- 기 간 : 2026. 5. 6. ~ 5. 28.(오후 2시 ~ 5시)
- 장 소 : 경로당 26개소
- 팀 원 : 4명(보건지소 2, 진료소장, 보건소 전문인력 1)
- 세부일정

월일(요일)	장 소	월일(요일)	장 소
5.6(수)	약수1경로당→학림경로당 →중평경로당→학성경로당 → 대악경로당(대악진료소)	5.11(월)	월성경로당(대악진료소)
5.12(화)	하만경로당→용두경로당 →궤전경로당	5.13(수)	장사경로당 →대방경로당(대악진료소)
5.15(금)	연동경로당(대악진료소)	5.20(수)	화룡경로당→약수4경로당 →가인경로당 →신촌경로당(대악진료소)
5.26(화)	대흥경로당→갈마경로당 →대정경로당→성암경로당	5.27(수)	명치경로당→용동경로당 →강선경로당
5.28(목)	원동경로당→복상경로당 →하웅경로당		

- 내 용
 -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안내
 - '25-'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기간 연장 (~ 2026. 6. 30.)
 -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수칙
 - 올바른 손씻기로 감염병 예방
 -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안내 (5. 16. ~ 7. 31.)

문 의 ☎ 390-7986(북하보건지소)

